

July 21, 2020

## Legal Update

### Policy and Law Report \_Vol.44

####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7. 13. ~ 7. 17.)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 7. 14.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2020. 7. 10.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및 중소·중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서울 1개, 제주 조건부 1개로 대기업 특허 수 결정, ② 부산과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신규 특허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 ③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하여 서울 및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특허 부여 등이 있음

### [참고자료] '20년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 [금융위·금감원]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발표

2020. 7. 13.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시행하면서 허가 매뉴얼 등을 배포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개인신용정보 일부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대상에 해당, ② 2020. 5. 13.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을 우선 심사하여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2021. 2. 5.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함, ③ 원칙적으로 예비허가를 거치도록 운영할 예정이나, 예외적으로 모든 허가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비허가 절차 생략 가능 등이 있음

### [참고자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 보도자료



### [참고자료] 마이데이터 주요 Q&A



### [참고자료] 마이데이터 허가매뉴얼



### [금융위]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워킹그룹 첫 회의 개최

2020. 7. 16.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분야 AI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 ① AI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로 AI 금융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실무 프로세스 마련, ② 금융회사·핀테크 등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 구축(가칭 금융분야 AI 데이터 Library), ③ 레그테크(RegTech), 쉐테크(SubTech)에 AI를 접목하여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을 효율화하는 방안 검토 등이 있음

### [참고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0. 7. 13.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 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 ②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산정기준 마련, ③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등이 있음

### [참고자료]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참고자료]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



## [과기부1]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2020. 7. 13.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관련,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 및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② 다양한 기업이 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 완화 예정, ③ 실증 진행경과 검토 후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예정 등이 있음

### [참고자료] 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과기부2]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논의

2020. 7. 15. 통신3사 대표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 ① 통신4사(이통3사+SKB)의 향후 3년간 (‘20~’22년) 약 24.5~25.7조원 투자(잠정) 추진, ② ‘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 ③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음

### [참고자료] 최기영 장관, 통신 3사 대표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논의



## [복지부·금융위 등]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뉴딜 선도 방안 발표

2020. 7. 15.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추진. 주요 내용으로 ①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로 신용도 상향 가능, ② 8월 중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예정, ③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 구축 예정('21년까지) 등이 있음

### [참고자료]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해 디지털 뉴딜 선도



## [국토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논의

2020. 7. 1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 ① '22년부터 연료보조금 도입, ②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 계획, ③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예정 등이 있음

### [참고자료] 수소차 확산을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2년부터 연료보조금



## [식약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20. 7. 16.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 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개선(1단계), ②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이행 사항 명확화(2단계), ③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3단계) 등이 있음

### [참고자료]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



## [문체부]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 발표

2020. 7. 1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올해 2월에 출범한 민관 협력 한류협력위원회를 법제화해 정부의 핵심 협업체로서 운영하고 온라인상 해외 한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수집·활용, ②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③ 게임, 이스포츠, 웹툰 및 1인 방송·영상 콘텐츠 등 비대면 모바일 매체에 적합한 한류 콘텐츠들을 집중 육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신한류로 전세계 한류 열기 이어 나간다



[참고자료]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



###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14.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총 35.1조원 확정                                                                                                                                                                                                                                                                           |
|--------|--------------|---------------------------------------------------------------------------------------------------------------------------------------------------------------------------------------------------------------------------------------------------------------------------------------|
|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개방 및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li> <li>•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개→30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8,400개사)</li> <li>•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1,000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6조원),</li> <li>• AI 솔루션 바우처 제공(中企 3,400개사) 및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지원(中企 1,350개사)</li> </ul> |
|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 개발 확대(~'25, 2,045개(누적))</li> <li>•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 확대(~'25, 3,040개(누적))</li> <li>• 다양한 교육콘텐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li> </ul>                      |
|        | 비대면 산업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IoT 등 디지털기술 도입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 등 가능</li> <li>•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li> <li>•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li> </ul>                              |
|        | SOC 디지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11개소),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의정부, 화성, 구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li> <li>•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li> <li>• 로봇·IoT·빅데이터 활용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li> </ul>                                                           |

|        |                    |                                                                                                                                                                                                                                                                                                             |
|--------|--------------------|-------------------------------------------------------------------------------------------------------------------------------------------------------------------------------------------------------------------------------------------------------------------------------------------------------------|
| 그린 뉴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25개 지역, ~'22년)</li> <li>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지방 상수도(161개 지자체) 대상 AI·ICT 기반의 수도물 공급 소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li> <li>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 ~'22년)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 ~'24년) 추진</li> </ul>                           |
|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li> <li>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li> <li>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li> </ul>                 |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대 선도 분야(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li> <li>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 팩토리(1,750개소)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li> <li>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23년), CO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24년)</li> </ul> |
| 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li> <li>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li> <li>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li> </ul>                                                                                                                        |
|        | 사람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4→6개), SW 중심대학 40개 운영</li> <li>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li> <li>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6,000개소)</li> </ul>                                                                                            |

| 과제            | 총사업비 (국비) |             | 일자리     |
|---------------|-----------|-------------|---------|
|               | '20추~22   | '20추~25     | '20추~25 |
| 디지털 뉴딜        |           |             |         |
| 데이터 댐         | 8.5 (7.1) | 18.1 (15.5) | 38.9    |
| 지능형(AI) 정부    | 2.5 (2.5) | 9.7 (9.7)   | 9.1     |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0.1 (0.1) | 0.2 (0.1)   | 0.2     |
| 그린 뉴딜         |           |             |         |
| 그린 리모델링       | 3.1 (1.8) | 5.4 (3.0)   | 12.4    |
| 그린 에너지        | 4.5 (3.7) | 11.3 (9.2)  | 3.8     |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8.6 (5.6) | 20.3 (13.1) | 15.1    |
| 융합 과제         |           |             |         |
| 그린 스마트 스쿨     | 5.3 (1.1) | 15.3 (3.4)  | 12.4    |
| 디지털 트윈        | 0.5 (0.5) | 1.8 (1.5)   | 1.6     |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8.2 (5.5) | 14.8 (10.0) | 14.3    |
| 스마트 그린 산단     | 2.1 (1.6) | 4.0 (3.2)   | 3.3     |

##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관보19793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관보19795호)]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로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자산유동화 시장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변모하였음.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98. 9월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새로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바,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보유 규제와 같은 포괄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을 제외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의 제재를 동액 상당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9조의2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1인)]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SNS를 기반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판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거래조건의 제공 및 청약철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매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5인)]**

현행법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 및 광고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다핵화되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추진체계의 정비와 필수적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산업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에 대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과 준비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음.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신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8인)]**

현행「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8 및 제2조제12호의9 신설 등)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장기적 사회적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대부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부채의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최고이자율 25퍼센트는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함. 그런데 피치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1인)]**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1인)]**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평균 약 10개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안 제1조 등)

###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의원 등 10인)]**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진흥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1조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로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3조3제3호, 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 제16조의제4항)

###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